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ARTERA

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)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
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정당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및 예비추첨 진행이 가능하며, 부적격이 확정된 당첨자는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당첨자(예비입주자) 서류제출 및 계약 일정

구 분	정당당첨자	예비입주자	장소 및 신청 방법
제출기간	2025.04.26.(토) ~ 04.29.(화) 10:00 ~ 16:30	2025.04.30.(수) ~ 05.02.(금) 10:00 ~ 16:30	※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 • 당사 견본주택 : 충청북도 흥덕구 청주시 외북동 325번지 - 서류 접수 예약 시스템 : 2025.04.23.(수) 10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- 정당 계약 예약 시스템 : 2025.04.30.(수) 10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
계약기간	2025.05.07.(수) ~ 05.10.(토) 10:00 ~ 16:30	서류제출 대상자, 추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	

※ 특별공급 부부 중복 당첨시 처리방법 :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 후당첨 무효 처리시,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좌부활신청서 작성 세대에 한해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.
※ 사전 방문 예약 시 당첨자의 연락처가 청약 신청 시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자격확인 서류(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) 현장 접수 및 예비 입주자 포함)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
자격확인 필수서류	신분증	청약자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**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**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 계약용 ※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 -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)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
	소득증빙서류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※ [표1] 소득증빙자료 참조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추가)

추가 필요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
추가 필요서류	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청약자	•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"기존주택 처분 조건"으로 당첨된 경우(견본주택 비치)
	복무 확인서	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한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)
	임신진단서	청약자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		•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
	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신생아 우선(또는 일반)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또는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•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부동산 소유현황	청약자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※ 발급처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(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) ※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[표2] 자산기준 참조
	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		•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※ [표3] 자산입증서류 참조 ※ 기존주택 처분 조건 신청자는 추첨제 청약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 배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)	청약자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청약자 및 세대원	-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 발급 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•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청약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
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자	•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, "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
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용도 :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※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 ※ 대리인 접수(계약)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, 서명 또는 날인 ※ **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**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.04.04.(금))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※ 여권 제출 시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바랍니다.
※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 등 "전체포함" 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장애인 및 고령자인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신청서류 완비 및 접수 시간을 확인바랍니다.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
[표1]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-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'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'으로 발급) - 계속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, 해당직장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② 재직증명서	①,②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(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* 세무서
	신규사업자(공고일 이전)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본) - 국민연금 미가입자 :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(신고서상 금액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※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	①,②,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(해촉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,② 해당직장,세무서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
일용직 근로자	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직장/세무서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2024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② 사실증명서 (소득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정부24 ※ 세무소
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	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[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]	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

※ **군복무 중(직업군인 제외)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**
: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
※ **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**
: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
※ **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**
: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
※ **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**
: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
※ **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**
: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 :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제2조2의 3.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)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
※ 상기 소득입증 관련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,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소득증빙서류는 홈택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,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"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"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.

[표2] 자산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 3,100만원 이하	건축물	•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/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–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–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주택 – 단독주택 –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주택 외 –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토지	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• 제외사항 - 「농지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· 구 · 읍 ·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,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

[표3] 자산기준 입증서류

서류구분		제출서류	발급처
'부동산 소유현황'이 있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 소유현황(세대원별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,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③ 위택스(www.wetax.co.kr), 행정복지센터
	추가 (해당자)	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※ 주택과 토지의 경우, 일사편리(kras.go.kr)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,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(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) - 서울시 : 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·제출 - 서울시 외 : 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·제출	①, ② 행정복지센터 / 일사편리(kras.go.kr) ③ 서울시 – 이택스(etax.go.kr) 서울 외 – 위택스(www.wetax.co.kr)
	해당자	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
'부동산 소유현황'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 소유현황 >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·제출 ※ [조회 명의인] "신청하신 성명(명칭), (주민)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."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(관할자치단체 : 전체 / 과세연도 : 2023년 / 재산세는 '건축물, 토지, 주택'만 선택) ※ 위택스(www.wetax.go.kr) > 납부결과 > 증명서발급 > 세목별 과세증명서 >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	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/정부24 ② 위택스(www.wetax.co.kr), 행정복지센터

※ 자산보유기준(3.31억원)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.
※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: 세대원(미성년자 포함) 전원 제출
1.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(단,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.)
2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 :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,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(해당 시청, 구청, 군청,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